

#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7년 3월 6일

나. 회부일자 : 1997년 3월 6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('97. 1. 1시행)됨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회 직명과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관의 직명을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○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·시행에 따른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의 직명변경(제2조 제3항)

· 위 원 : 내무국장 → 문화관광국장으로

○ 다른 조례의 개정

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 기금운용관의 직명변경(제8조)

· 기금운용관 : 내무국장 → 문화관광국장으로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

이는 충청북도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설치운용의 기금운용관에 대한 직명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중에 "내무국장"을 "문화관광국장"으로 하고, 문화예술진흥 기금조성설치운용 조례의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서는 기금운용관을 "내무국장"에서 "문화관광국장"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

본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첨 부

-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